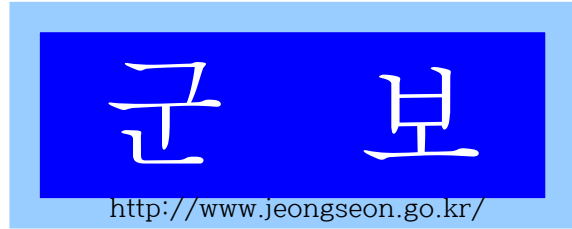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8호 2018. 9. 19.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944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정선군 공고 제2018-978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5
- 정선군 공고 제2018-980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944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신설 관광사업장의 보조지원 및 위탁업무를 위한 개별적 조례 제정 등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조항에 일괄적 조항을 삽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사업자 및 관광상품 용어 정의 확대(안 제2조)
- 관광사업 추진 및 관광사업자 보조근거 마련(안 제27조, 제28조)
- 관광사무 위탁업무 조항 통합 신설(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26131)
- 연락처 : 전화(033-560-2569), 팩스(033-560-2593),
이메일(k373587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군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합된 상품을”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포상”을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한다.

제7장에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 자연생태 등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
4.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2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이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장(제2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관광사무 위탁

제29조(위탁업무)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

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
2.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운영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4. 군민이 참여하는 보조사업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제4호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한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7조 앞에 “제9장 포상”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관광사업자”란 <u>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u> 5. “관광상품”이란 <u>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u> 제7장 포상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관광사업자”란 <u>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군에서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u> 5. ----- ----- <u>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합된 상품을 --.</u> 제7장 <u>관광자원 개발 등</u> 제2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u>군수는 법 제48조 및 제4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1. <u>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 자연생태 등</u> <u>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u>

<신 설>

2.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
 4.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2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
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
이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 지급 · 정산 · 반환 등은 「정
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신 설>

제8장 관광사무 위탁
 제29조(위탁업무) ① 군수는 민간
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
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
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
팅
 2.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
운영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
답사여행 사업

4. 군민이 참여하는 보조사업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필요하
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제4호의 경우
계약의 목적성

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
우 다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해
당 보조사업에

참여한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정
선군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9장 포상

관련법규 발췌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강원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보조금)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도내공항에 정기·부정기 항공기를 취항시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8. 시장·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직접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
3.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4.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8-978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이와 중복되는 교육환경 평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입법예고 기간 : 2018. 9. 19. ~ 2018. 10. 10.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전 화: 033-560-2863
- 팩 스: 033-563-4000
- 이 메 일: nutri@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5조제4항 중 “아니” 를 “안”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8-980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류 표기로 “제16조의5”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 “제16조의5”로 수정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3조제1항제3호),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안 제5조)
 -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 ⇨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수정
-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6호 서식, 제7호 서식
 - 각 서식에서 “제16조의4” ⇨ “제16조의5”로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8. 9. 19. ~ 2018. 10. 10.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전 화: 033-560-2863

○ 팩 스: 033-563-4000

○ 이 메 일: nutri@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